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약칭: 연구실안전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27호, 2025. 1. 31.,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8, 4859

제20조(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 교육·훈련 담당자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10조제1항 관련)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교육대상</th><th>교육시간
(교육시기)</th><th>교육내용</th></tr>
<tr><td rowspan="3">1. 신규 교육·훈련</td><td rowspan="2">근로자</td><td>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td><td>8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td><td rowspan="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연구실사고 사례, 사고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td></tr>
<tr><td>나.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td><td>4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td></tr>
<tr><td>근로자가 아닌 사람</td><td>다.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td><td>2시간 이상
(연구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td></tr>
<tr><td rowspan="2">2. 정기 교육·훈련</td><td colspan="2">가. 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td><td>연간 3시간 이상</td><td rowspan="2">·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안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td></tr>
<tr><td colspan="2">나.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td><td>반기별 6시간 이상</td></tr>
</table>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3시간 이상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특별안전교육·훈련	연구실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비고

1. 제1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 또는 연도(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로 한정한다)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해서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영남대학교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제정 2005. 1.25. 교무위원회	개정 2014. 9.18. 기획위원회	개정 2021. 1. 5. 기획위원회
개정 2006. 3.14. 기획위원회	개정 2015. 1.26. 기획위원회	개정 2021. 4. 7. 직권 수정
개정 2007. 3. 9. 기획위원회	개정 2015. 2.26. 기획위원회	개정 2021. 4.13. 직권 수정
개정 2008. 5.30. 기획위원회	개정 2016. 3. 2. 기획위원회	개정 2021. 6.18. 기획위원회
개정 2010. 2.19. 기획위원회	개정 2016.11. 2. 기획위원회	개정 2021.10.19. 기획위원회
개정 2010. 9.30. 기획위원회	개정 2017. 2.16. 기획위원회	개정 2022. 5. 3. 기획위원회
개정 2011. 4. 1. 기획위원회	개정 2017. 5. 2. 기획위원회	개정 2022. 6. 7. 기획위원회
개정 2011. 6.28. 기획위원회	개정 2018. 1.18. 기획위원회	개정 2023. 3. 7. 기획위원회
개정 2011.11.11. 기획위원회	개정 2018. 2.28. 직권 수정	개정 2024. 2.20. 기획위원회
개정 2012. 6.11. 기획위원회	개정 2018. 6.16. 기획위원회	개정 2024. 2.20. 기획위원회
개정 2012. 7.20. 기획위원회	개정 2018.12.19. 기획위원회	개정 2025. 1.15. 기획위원회
개정 2012.12.12. 기획위원회	개정 2019. 6.10. 기획위원회	개정 2025. 2.28. 직권 수정
개정 2013. 2.15. 기획위원회	개정 2019.12. 3. 기획위원회	개정 2025. 9.16. 기획위원회
개정 2014. 1.22. 기획위원회	개정 2020. 1. 7. 기획위원회	개정 2026. 3. 3. 기획위원회
개정 2014. 6.18. 기획위원회	개정 2020. 7. 7. 기획위원회	

제2조(교육업적) 교육업적은 책임시수, 수업계획서 입력, 강의평가, 강의결과보고서 입력, 학생상담·지도, 스마트교육 역량강화 등의 영역을 평가하며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의과대학 교원의 교육업적평가는 제8조에 따른다.<개정 2006.3.14., 2010.2.19.,2010.9.30.,2011.4.1.,2011.6.28.,2012.7.20.,2014.1.22.,2015.2.26., 2016.3.2.,2018.1.18.,2018.12.19.,2021.1.5.,2021.6.18.,2021.10.19.,2022.5.3.,2025.1.15.,2025.9.16.,2026.3.3.>

[별표 1] 교육업적 평가기준<개정 2010.2.19.,2010.9.30.,2011.4.1.,2011.6.28.,2011.11.11.,2012.7.20.,2014.1.22.,2015.2.26.,2016.3.2.,2018.1.18.,2018.12.19.,2021.1.5.,2021.6.18.,2021.10.19.,2022.5.3.,2025.1.15.,2025.9.16.,2026.3.3.>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한도
필수항목	책임시수	15점 - ((책임시수 - 담당 강의시수) × 0.5))	15	100
	수업계획서 입력	6점 - (미입력 강좌 수 × 2)	6	
	강의평가	강의평가점수(100점) × 0.5	50	
	강의결과보고서 입력	3점 - (미입력 강좌 수 × 1)	3	
	학생 상담・지도	학생 상담·지도 비율 및 학생 상담·지도 교육 이수 실적에 따라 평가	20	
	스마트교육 역량강화	스마트교육 수업운영 및 스마트교육 이수 실적에 따라 평가	6	
가점평가항목	교양강의 담당	교양강의 담당 : 2점	2	5
	외국어강의 담당	외국어강의 담당 : 1점	1	
	MOOC 운영	교내·외 MOOC 운영 : 2점	2	
	인증프로그램 참여	인증프로그램 참여 : 1점	1	
	책임시수 초과강의	(담당 강의시수 - 책임시수) × 0.5	3	
	강의소개동영상 운영	강의소개동영상 운영 : 1점	1	
감점평가항목	휴·결강에 대한 미보강	미보강일수 1일 이하 : -1점, 1일 초과 : -2점	-2	-7
	폭력 예방 교육 등 미이수	폭력 예방 교육 등 미이수 : -1점	-1	
	연구실안전 교육(자연·공학계열) 미이수	**연구실안전 교육(자연·공학계열) 미이수 : -1점**	**-1**	
	수업컨설팅 미이수	신임교원 임용학기 포함 3개 학기 이내 수업컨설팅 미이수 : -3점	-3	
		강의평가 결과 80점 미만 전임교원 대상자 명단 통보일 이후부터 다음 학기까지 수업컨설팅 미이수 : -3점		
합계				100

비고

1. 연구년, 파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학년도 해당 학기의 평가점수로 갈음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직전 학년도 해당 학기의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전 학년도 해당 학기의 평가점수로 갈음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학부 수업을 담당하지 않은 교원의 평가점수는 0점으로 한다. 다만, 책임시수 5 미만인 교원이 대학원 수업을 담당하여 학부 수업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학기의 평가점수로 갈음하여 인정하되, 직전 학기의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전 학기의 평가점수로 갈음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각 항목별 평가점수는 해당 항목의 배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으며,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4. 학부 강좌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세부기준은 각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른다.
5. 법학전문대학원 강좌, 학생상담·지도는 학부 강좌, 학생상담·지도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6. 학부 수업을 담당하지 않은 특수대학원 소속교원의 평가점수는 전체교원의 평균점수를 부여한다.
7.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정직)으로 인해 수업을 담당하지 않은 교원의 평가점수는 75점으로 한다.

[별표 1의2] 의과대학 교육업적 평가기준<신설 2010.2.19, 개정 2010.9.30.,2011.4.1., 2011.6.28.,2014.1.22.,2017.5.2.,2018.1.18.,2018.12.19.,2019.12.3.,2021.6.18.,2022.5.3.>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한도
필수 항목	담당 강의시수	18점(기본점수) + (담당 강의시수)	20	100
	수업계획서 입력	5점 - (미입력 강좌 수 × 2)	5	
	강의포털시스템	담당 강좌의 2분의 1이상 강좌에서 활용	2	
	강의평가	강의평가점수(100점) × 0.5	50	
	강의결과보고서 입력	3점 - (미입력 강좌 수 × 1)	3	
	학생 상담·지도	10점 - 상담·지도 내역 미입력 비율	10	
	스마트교육 역량강화	스마트교육 수업운영 및 스마트교육 참여 활동에 따라 평가	10	
가점 평가 항목	PBL	PBL 튜터 또는 모듈 개발	3	10
	OSCE/CPX	OSCE/CPX 평가 또는 모듈 개발	3	
	분반강의	1시수 이상 분반 강의	3	
	시기성과	시기성과평가 참여	3	
	외국어강의	1시수 이상 외국어 강의	3	
	MOOC 운영	교내·외 MOOC 운영	2	
	기초·임상 종합평가	기초·임상 종합평가 관련 업무	2	
	통합교과목	통합교과목 책임·간사 교수	2	
	학년담임교수	학년담임교수	2	
	전체교수회의, 교수연수회 참석	전체교수회의, 교수연수회 참석	2	
	학생연구지도	학부생 연구지도	2	
	대학원생 지도	석·박사 지도교수	2	
감점 평가 항목	휴·결강에 대한 미보강 (승인없이 무단 변경)	미보강일수 1일 이하 : -1점, 1일 초과 : -2점	-2	-7
	폭력 예방 교육 등 미이수	폭력 예방 교육 등 미이수 : -1점	-1	
	연구실안전 교육(의학계열) 미참여	**연구실안전 교육(의학계열) 미참여 : -1점**	**-1**	
	신임교원 의학교육연수 미참여	신임교원 의학교육연수 미참여 : -2점	-2	
	스마트교육 역량강화 교수법 교육 미참여	학기당 2시간 미만 참여 시 : -1점	-1	
합계				100

비고

1. 연구년, 파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학년도 해당 학기의 평가점수로 갈음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직전 학년도 해당 학기의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전 학년도 해당 학기의 평가점수로 갈음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신규 임용된 교원이 해당 학기의 강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과대학 교원의 교육업적 평가점수 평균점을 부여한다.
3. 각 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4. 학부 강좌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세부기준은 각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른다.
5. <삭제>
6. 가점평가 항목은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7. 교원의 특성화 성과급 지급을 위한 교육업적 평가 시 의과대학 교원의 개별 교육업적 평가점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text{교육업적 평가점수} \times \frac{\text{의과대학을 제외한 전체 교원 교육업적 평균점}}{\text{의과대학 교원 전체 교육업적 평균점}}$$

영남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정 2016. 7.15. 교무위원회
개정 2017. 2.21. 교무위원회
개정 2018. 2.28. 직권 수정
개정 2018. 5. 8. 교무위원회
개정 2019. 8.27. 교무위원회
개정 2021. 3. 9. 교무위원회
개정 2022. 2.22. 교무위원회
개정 2023. 2.28. 직권 수정
개정 2025. 2.28. 직권 수정

제14조(안전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2.2.22.>

③ 연구실책임자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 중 안전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의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연구실안전교육·훈련 이수확인서 [별표 6]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2.2.22.>

제16조(학생 안전교육) ① 실험실습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안전교육은 해당 과목 담당교원이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8.27.>

② 실험실습과목 담당교원은 실험실습수업을 수강하는 모든 학생에 대하여 학기 첫 강의시간에 반드시 개인안전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기 중 실험실습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적절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8.27.>

③ 연구실책임자 또는 실험실습과목 담당교원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자가 각 실에서 연구 및 실험실습을 할 경우 그 실의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받은 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8.27.>